

2005. 10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5.10. 6	2005.10. 6	2005.10.14	2005.10.20	기획감사과장
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2005.10.14	세정과장
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공공시설 관리 소장
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	"	"	"	"	정태갑 의원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 중 호암 공원 내 기존 시설물의 관리·운영주체가 본청의 관련 부서와 중복됨에 따라
- 업무처리 소관을 보다 명확히 하여, 금후 시설물의 운영·관리에 따른 업무분쟁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2) 주요내용

-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 중
 - 새로 신축한 국민체육센터, 다목적체육관, 문예회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공시설 관리소에서 담당하고
 - 기존의 시설물 중 택견전수관, 우륵당은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하는 것으로 하며
 - 청소년수련원, 호암공원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여 본청 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개정

나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(안 제27조 제3항)

다.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,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설치근거 및 사용료 등을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

2) 주요내용

- 충주시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함
(안 제2조 제1호)
-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를 법인·단체·개인으로 함(안 제26조제1항)
-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(전용료 및 이용료) 징수기준 신설(안 별표)

라.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(법률 제7184호 2004. 9. 6 시행)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정책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(강제규정)함에 따라
-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

2)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심의사항(안 제2조)
- 위원회는 위원장(시장), 부위원장(호선) 각 1인을 포함, 20인 이내로 위촉 및 임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(안 제3조)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(안 제4조)
-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-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조항 마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
지난 2005년 5월 16일 제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, 의결한 바 있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분장사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
- 이후 공공시설관리소 운영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서간 업무분장에 대한 이견으로 업무추진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당초 국민체육센터 등 호암지 주변에 소재한 6개 공공시설물의 통합적·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 사무를 조례로 정한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,
- 더욱이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당초 조례개정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
- 같은 타운 내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을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린 3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
- 일부 시설물의 운영은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영조물의 유지관리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인력의 보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
나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매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부터 5월 30일자로 공시함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2개년도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-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보다 2개월 이상 늦은 지난 2005년 8월 19일에 시달되어 금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
- 본 조례의 효력을 과세시점인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데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또한, 충주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9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동 기준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에 적용할 것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

다.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에 체육시설로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, 동 시설사용 또는 이용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것임

○ 다목적체육관의 경우는 충주체육관과 유사한 시설로써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책정하였고,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관내 사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등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과 사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개정전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?

○답변 :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가 있는데 운영관련 업무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

나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“없음”

다.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삼원초등학교의 수영장에 비해 비싼 편인데?

○답변 : 타시군과 비교하였고 민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음

라.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
▶질의 : 관계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?

○답변 : 시청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등이 해당됨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수정 가결
- 공공시설관리소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원의
유지관리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(수정안 따로붙임)
- 나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- 가.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. 끝.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 제7호 중 목 "(택견전수관, 우륵당)"을 "(청소년수련원, 택견전수관, 우륵당)"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공공시설관리소</p> <p>가.~나. (생략)</p> <p>다. 호암공원내 시설물(택견전수관, 우륵당)의 유지관리</p> <p>라. (생략)</p> <p>8.~9. (생략)</p>	<p>제17조(소관사무).....</p> <p>.....</p> <p>1.~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공공시설관리소</p> <p>가.~나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다. 호암공원내 시설물(청소년수련원, 택견전수관, 우륵당)의 유지관리</p> <p>라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~9. (개정안과 같음)</p>